

## 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108조(납세지)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과한다.	제108조(납세지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 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(定繫場)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로 한다.	4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 항의 소재지. 다만, 「수상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,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로 한다.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